

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정책연구원(나급) 채용 공고

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에서 근무할
공무직근로자(정책연구원 나급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□ 채용 예정 인원 : 총 1명

구 분	채용예정 인원	담당업무
정책연구원 나급	1	정책개발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조사·연구, 한약 등 유통·품질 관리 및 GMP 실태조사 지원 등

※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자격 요건(면접예정일 기준)

○ 공통요건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결 격 사 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결 격 사 유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자격요건

직종구분		채용자격기준
직종	등급	
정책 연구원	나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 ·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 · 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 · 연구실적이 있는 자 [관련분야 학위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학, 약학, 수의학, 생물학, 생화학, 화학공학, 생물학, 생명과(공)학, 분자생물학, 유전공학, 분석화학 등 유사 분야 [관련분야 경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기업 등에서 한약 등 관련 근무 경력

○ 우대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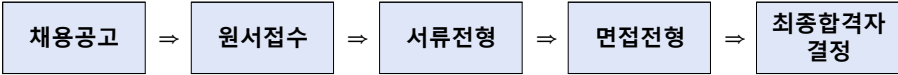
구분	내 용
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(연차별 차등 배점) *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경력과 동일 ○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(학위별 차등 배점) *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학위와 동일 ○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의사, 약사, 한약사,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

2. 근무조건

□ 근무조건

- (신분) 공무원근로자(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)
- (근무기관)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
 - ※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(전보)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
- (보수) 월 2,261,500원 (주 40시간 기준,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)
 - ※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(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)
 - ※ 정액급식비(월14만원)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 시), 맞춤형 복지포인트(1년 이상 근무 시) 별도 지급
- (근무시간) 주 5일, 1일 8시간
- (계약기간) 채용계약일 ~ '24년 12월 31일
 - ※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
3. 일정 및 제출서류



- 채용공고: '24. 3. 28.(목)~'24. 4. 5.(금)
 - ※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등에 공고
- 원서접수 : '24. 4. 2.(화) 09:00~'24. 4. 5.(금) 18:00
 - ※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우편접수(<https://employ.mfds.go.kr>)을 통한 인터넷 접수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'24. 4. 11.(목)
 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
- 면접전형(예정) : '24. 4. 17.(수)
- 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 : '24. 4. 22.(월)
 - ※ 최종합격자 명단 등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게시
- 채용 예정일 : '24. 4월 예정
 - ※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공통서류 (필수제출)	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 -최종학력증명서(석·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, 졸업증명서만 인정) -성적증명서(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) -경력증명서(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, 경력(재직)증명서만 인정)
선택서류 (해당자 제출)	-면허(자격)증 사본 -어학성적서, 장애인 증명서, 등 기타 증빙서류 * 운전면허 제외

○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
-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출신학교, 출생지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 후 제출
- 최종학력 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이력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위원에 제공되지 않으므로, 원본 그대로 스캔 후 제출

4. 전형별 방법

□ 서류전형

채용분야	서류전형(선발 배수)
정책연구원 나급	○ 소극적 서류전형 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*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(적극적 서류전형)

채용분야	서류전형(선발 배수)				
	○ 적극적 서류전형(3배수)				
	계	평가점수			
		자기 소개서	관련분야 경력	관련분야 학위	우대사항 (자격증)
	100점	30	30	20	2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 					

□ 면접전형

채용분야	내용
정책연구원 나급	○ 평정요소를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	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
	○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>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

□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	최종합격자	예비합격자(운영기한)
공무직(사무원)	1명	1명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)
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
 - ※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5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'에 따라 처리됩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신원조회·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한 대상 분야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가 불가합니다.

제12조의2(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(재산등록의무자)과 의약품·마약·의약외품·화장품·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(이하 "제한대상 분야"라 한다)를 소관하는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「약사법」 제38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(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3조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·품질관리 조사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의 적용 대상자를 모두 "제한대상자"라 한다)은 제한대상 분야 관련 금융투자상품(이하 "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"이라 한다)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삭제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
1. 상속, 증여(유증을 포함한다),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
2.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

(※ 문의 :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김창연 ☎043-719-3363)